

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이성배 의원 (찬성자 11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835 호

다. 발의일자 : 2019. 8. 7.

라. 회부일자 : 2019. 8. 13.

2. 제안이유

공기업 사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게 할 필요가 있음.

3. 주요골자

가. 이사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(안 제8조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서울시설공단(이하 '공단') 이사장으로 하여금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공단 업무를 총괄하도록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에 “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”는 문구를 추가하려는 것임.

[표] 주요 개정내용

현행	개정안
제8조(이사장) ① (생략)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<u>총괄한다</u> . ③ (생략)	제8조(이사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_____ --- <u>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</u> . ③ (현행과 같음)

- 참고로, 본 개정안을 발의한 이성배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동일한 개정내용으로 이번 회기에 서울교통공사, 서울에너지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임([표] 참조).

[표] 이성배 의원 발의 조례안 현황

연번	의안번호	발의일자	발의자	발의안	소관위원회
1	834	'19.8.7.	이성배 의원	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교통위원회
2	835	'19.8.7.		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도시안전건설위원회
3	836	'19.8.7.		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환경수자원위원회
4	837	'19.8.7.		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도시계획관리위원회

- 공단의 경영과 관련해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의2¹⁾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공기업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이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해야 할 경영목표,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,
- 또한, 공단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서 제4조(이사장의 권한과 책임) 제1항에 “이사장은 공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”고 명시하고 있음.
- 한편, 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3항²⁾에는 이미 농수산물공사 사장의 경영성과 책임에 대하여 동일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.
- 따라서 동 개정안은 공단 이사장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조례에도 명시하여 강조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여겨지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
1) 제58조의2(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,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.
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2) 제8조(사장) ① 공사의 사장(이하 "사장"이라 한다)은 시장이 임면하되,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② 시장은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.
 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,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 ④ 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참고로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³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⁴⁾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, 6개 특·광역시 시설관리공단(서울, 부산, 인천, 대구, 울산, 세종) 중 서울시설공단이 ‘17년 4위(‘다’ 등급), ‘18년 2위(‘나’ 등급), ‘19년 1위인 ‘가’ 등급기관에 선정된 바 있음.

[표] 최근 3년간 서울시설공단 경영평가 결과

구 분	2017년 (‘16년 실적)	2018년 (‘17년 실적)	2019년 (‘18년 실적)
평가등급	다 등급	나 등급	가 등급
점 수	88.60점	87.97점	91.16점
순 위*	4위	2위	1위

* 6개 특·광역시 시설관리공단(서울, 부산, 인천, 대구, 울산, 세종) 중 순위

- 3) 제78조(경영평가 및 지도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, 업무의 능률성, 공익성,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에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.
 -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지방공기업(시·도지사의 경우에는 시·군·자치구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한다)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,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.
- 4) 제68조(경영평가)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1. 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
 2. 경영평가 전문기관
 3. 회계법인
 4.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
 - ③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한다. 이 경우 공사·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회계감사종료 후 4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 - ④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